

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4 - 24호

임실군의회 김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임실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. 6. 4.

임실군의회 의장



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김종규 의원 대표발의)

1. 제 안 이 유

- 선거일에 대한 의무규정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, 회의규칙 재정비를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 요 내 용

- 가. 조항 수정(안 제3조)
 - 의석 순서 개정
- 나. 조항 삭제(안 제8조제2항)
 - 선거 시기에 관한 조문 삭제
- 다. 조항 수정(안 제9조 제2항)
 - 다듬어지지 않은 표현 등

3. 참 고 자 료

- 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입법예고 : 2024. 6 .4. ~ 2024. 6 .10.(6 일간)

라. 기 타

- 1) 일부개정 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
- 2) 관련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단서 중 “지역선거구 미”를 “지역선거구, 연장자,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.

제9조제2항 단서 중 “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시작”을 “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”로, “날로”를 “날까지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의석배정)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<u>지역선거구</u> 미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.	제3조(의석배정) ----- ----- -- . ----- ----- --- <u>지역선거구, 연장자,</u> ----- -----.
제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선거는 <u>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,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때에는 그 임기 끝나는 날전 5일에 실시한다. 그러나,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.</u> ③ ~ ⑤ (생략)	제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①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② ~ ④ (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)
제9조(의장·부의장의 임기) ① (생략)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<u>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시작</u> 후 2년이 되는 <u>날로</u> 한다. ③ (생략)	제9조(의장·부의장의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. ----- ----- ---- <u>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</u> <u>의원의 임기개시</u> ----- ----- <u>날까지로</u> ----. ③ (현행과 같음)

□ 『지방자치법』

제57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와 임기)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·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·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한다.

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□ 『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』

제13조(의장·부의장의 임기)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는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.

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.

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

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- 임실군의회 김종규 의원